

# 202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도내 문화산업 기업이 보유한 우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기술인증,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Culture Research Center)」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모델의 R&BD(고도화 또는 리뉴얼) 지원
- 도내 문화산업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리뉴얼 지원으로 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

##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7. 10.(2개년 지원)**
    - (1차년도) 협약체결일 ~ 2026. 10. 31.까지
    - (2차년도) 2027. 1. 1. ~ 2027. 10. 31.까지
  - 지원방향
    - (1차년도) : 도내 문화산업 기업과 도외 기업간 협업(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 개발
    - (2차년도) : 1차년도에 R&BD된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 지원
- ※도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하며 도외기업은 '27. 10월 말까지 지사 설립 필수

###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지원규모(3개 과제, 총 438백만원)	사업자부담금(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유형 과제별 146백만원, 3개 과제</li> <li>• <u>도내 3건(도외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u>            ※도외기업은 '26. 10월 말까지 '27 하반기 개관하는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내 입주 필수이며 콘텐츠지원지원센터사업(프로그램 등) 관련 우대가점 부여 등 연계혜택 제공 예정</li> </ul>	총사업비의 10% 이상

- 콘텐츠 협업(자체/권리 보유한 콘텐츠 IP를 활용한 장르·산업·기술 융복합 사업화 콘텐츠 제작 지원

- 주관/참여기업간 협업을 통해 자체 IP 또는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 사업화(예: 구독, 라이선싱 등)하거나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로 개발

구분	내용
자체 개발	보유 자원(IP, 공간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
협업 개발	참여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생콘텐츠/제품 개발
기술 적용	기존 콘텐츠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 고도화
장르 전환	기존 장르(예: 애니메이션) 활용 공연, 관광 콘텐츠화

※상기 사례는 예시이며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 개발 가능함. 단, 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과제별 전문가 매칭 및 교육/자문 진행

- 콘텐츠 개발/기술개발단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진단, 전문가 매칭 및 품질 테스트(기능개선, 사용자 테스트 등), IP권리화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평가/인증획득 지원(기업창작 전담부서/연구부서,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 NET 등)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연계하여 지원예정. **연차별 인증획득 1건 필수**

-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기술 코칭

- 기술성, 사업성, IP 전략 분석 및 기술실시권 확보 비용 지원

※기업간 기술이전도 가능하며,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IP마켓, Smart Techbridge 등 공공 기술거래 플랫폼 활용 권장

**<주요 기술이전, 거래 플랫폼 >**

-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IP마켓):**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기술거래 플랫폼 (<https://ipmarket.or.kr/>)이며 국가 지식재산 거래금융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에게 지식재산의 거래, 금융, 사업화, 평가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 스마트 테크 브릿지(Smart Techbridge):**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술거래 플랫폼 (<https://tb.kibo.or.kr/>)으로 기술거래, 매칭, M&A 중개 등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원사항

- 결과평가 최우수과제 차년도 추가지원(마켓참여, 홍보, 쇼케이스 등)

※ 27년 예산은 결과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예정

## □ 사업구조

- 1차년도(1단계), 2차년도(2단계)에 걸쳐 단계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M R&amp;BD 고도화 지원</li> <li>○ 콘텐츠·기술·인증 기반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BM 실증·개발</li> <li>○ 콘텐츠·기술 사업화·상용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콘텐츠 제작(미디어아트, 앱 등)</li> <li>·기업/콘텐츠 진단</li> <li>·기술·시장 분석</li> <li>·BM 분석, 고도화</li> <li>·프로토타입(PoC, MVP) 기획</li> <li>·기업/기술 인증·기능 시험·성능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콘텐츠 고도화(미디어아트, 앱 등)</li> <li>·사용자 테스트·기능 고도화</li> <li>·콘텐츠마켓·유통·파트너십·전시 연계</li> <li>·콘텐츠 가치평가/기술가치평가 연계</li> <li>·후속 투자·매출 확대 전략</li> <li>·기업/기술 인증·기능 시험·성능평가</li> </ul>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핵심기술, 핵심원리, 구현 가능성 최소검증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기능제품): 최소 기능만 가지고 시장적합성, 사용자 피드백, 비즈니스 모델 검증 중심

※콘텐츠가치평가: 콘텐츠의 단계별(기획·제작) 사업화 가능성을 가치평가(등급, 경제성)하여 투자기관에 연계함으로써 투자유치 지원서비스(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기술가치평가: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사업화가능성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기술보증기금 운영)

## 4.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 지원자격(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별도 사업자번호 필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법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콘텐츠 개발·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법인)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항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지원 제외 및 참가자격 제한대상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신청자(기업)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법정관리·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자, 면책권자 포함)
  - 다.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인 경우

□ 지원분야 : 기존에 사업화(상용화)에 성공한 비즈니스모델(문화콘텐츠)의 R&BD(고도화 및 리뉴얼) 지원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금(현금)으로 매칭해야 함  
(예: 지원금 150,000천원인 경우, 자부담 16,670천원 매칭)
- 지원 년도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정규직)을 실시해야 함
- 최소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등록 및 인증(벤처인증, 신기술 인증 등) 필수

### ※ 신규인력채용 기준

- 신규채용인력은 본 연구과제 참여율 5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협약일 이후 시점부터의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인정함
  - 신규채용은 4대보험 가입/주5일근무(40시간 이상)만 인정
  -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근로계약서 작성 등)
- 협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을 해야 하며,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 사유에 대해 소명
- 고용유지 의무기간(5개월)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6 3. 25(수) ~ 4. 13.(월)
- 접수기간 : 2026. 4. 2(목) ~ 4. 13.(월) 15:00까지
  - ※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점심시간 제외),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방문 접수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따라 작성 후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 및 방문 제출 요망
- 접수처 : pks@ofjeju.kr(콘텐츠육성팀 박기석 책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과제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WP(날인X)</li>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지를 제외하고 <b>22페이지 이내</b>로 작성</li> </ul>
2	위탁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3	사업자부담금 약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양식에 작성, 직인 날인하여 제출</li> <li>※ 사업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함</li> </ul>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li> <li>• 참여예정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li> </ul>
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2년(2024,2025년) 재무제표</li> <li>※ 25년도 미결산시, 2023년도만 제출 (추후 25년분을 제출해야 하며, 참여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6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li> <li>※ 유효기간 확인 필수</li> </ul>
7	법인등기부등본		
8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9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0	사업화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 (원본대조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BD할 비즈니스모델의 사업화(운영) 여부를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li> <li>- 예 : 판매(유통) 계약서, 매출(실적)증빙, 실적증명서 등</li> <li>* 최근 5년 이내 발생(발급) 건만 인정 (인정기간: 2021. 2. ~ 2025. 2.)</li> </ul>
15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확인서(각 입주공간(시설)에 요청하여 발급)</li> </ul>
16	평가위원 추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F(날인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임2. 제출양식 내 추천표 양식 작성 및 제출</li> </ul>

※ 제출서류 6번은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 요망

※ 7~9번은 제출시 유효기간 확인 필수(제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선정 후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고

###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콘텐츠육성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박기석 책임연구원	064)735-0636	pks@ofjeju.kr

## 6.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

### ○ 선정기준

- 서면/현장검토: 서면/현장검토로 적부판정 후,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
  - ※ 현장 검토 내용(필요 시 진행): 본사 소재지, 사업내용 및 보유인프라 등 확인
- 발표평가: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평균점수 동일 시,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제외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 평균점수(우대가점 포함)가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처리 함
- 우선협상대상 선정: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기업)에게는 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보완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과제 검토 후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
- 발표시간: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발표자: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

###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전문성 및 우수성 (30점)	기업전문성 및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기업(주관, 참여기업 포함) 전문성 및 인력 우수성	3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및 확장성	
과제 우수성 (30점)	R&BD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R&BD 계획의 구체성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30
		진입예정인 시장분석 결과 및 목표(성과)의 명확성	
사업성 (40점)	사업화 계획 완성도	R&BD후 사업화(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전문성(품질 관리 등) 및 관리 적정성	40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상용화) 이후 발전가능성 및 지속성	
<b>합 계</b>			<b>100</b>

#### 【우대가점】 (최대 5점)

- 필수채용 인원 외 추가 채용(최대 2점, 추가 1인당 1점)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입주기업(2점)
  - ※ 주관, 참여기업 모두 해당되며 해당 우대가점은 과제당 최대 2점 부여
- 인증사회적기업(예비포함)(1점)
- 여성기업(1점)
- ESG 강의 이수(대표자+과제책임자) 기업(1점)

## 7. 지원금 지급 및 절차

○ 지원금 지급 관련: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5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50%)

※ 지원금 지급 회차 및 비율은 예산 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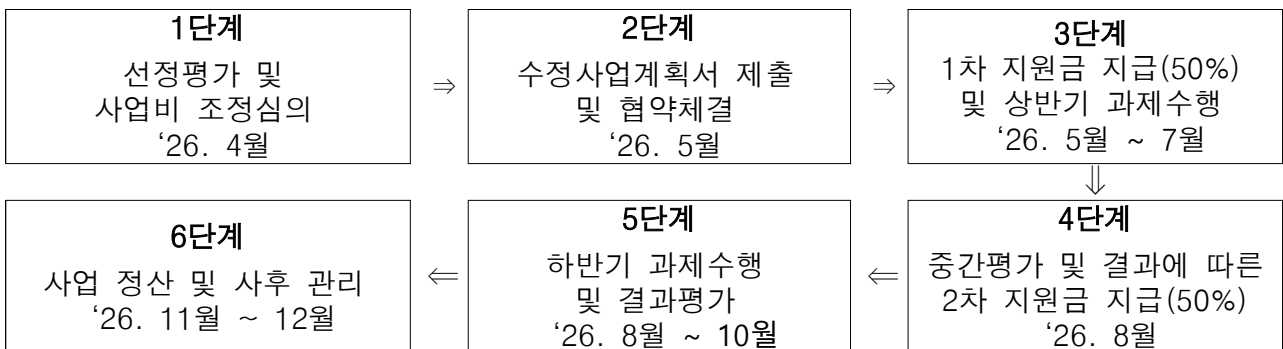
구분	중간평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60점 이상	2차 지원금(5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합격	60점 미만	과제실패 및 탈락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사업비 산정기준) 참고**

- 사업자부담금(기업부담금)선 집행 필수

-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절차



○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 협약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

○ 정산내역 증빙자료: 세부내용은 [붙임1. 사업 안내서] 참조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2026.10.31.)까지 콘텐츠 제작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 진흥원 지정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2026.10.31.)로부터 진흥원 지정일까지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관 중 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불가
- 과제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3):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

- 과제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서 전시·시연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9. 결과물의 활용

### ○ 활용범위

- 사업결과물의 소유는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은 아래 목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공공적인 목적에 한해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온·오프라인으로 활용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관)하는 행사, 홍보 등에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활용 가능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등 홍보물 제작 시 사업결과물의 일부를 활용 가능
- 지원사실 명기
  - 사업결과물(콘텐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원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야 함

2026년 3월 25일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장